

부산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건축·도시계획) 임용시험 재공고

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건축·도시계획 분야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5일

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근거 법령

-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8308호, 2022.1.21.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32605호, 2022.4.27.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예규 제217호, 2022.9.1.)
-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(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48호, 2022.6.29.)

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 분야	임용등급	임용 인원	임용기간	근무예정부서	주요 업무
정책협력 입법·행정 지원요원 (건축· 도시계획)	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(8급상당)	1명	1년 (주 35시간)	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(해양도시안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위원회 소관 건축·도시계획분야 안건 관련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업무○ 위원회 소관 건축·도시계획분야 정책연구 과제 수행 지원○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국내외 친선 교류 등 운영○ 기타 위원회 관련 홈페이지·회의 관리 등 행정업무 등

※ 임용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

3. 응시 자격(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예정일)

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기타 법령(공직선거법, 병역법, 치료감호법 등)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
- 응시연령
 - 시간선택제임기제(라급) : 18세 이상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

<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<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>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나. 분야별 자격요건

분 야	직 급	자 격 요 건
정책협력· 입법·행정 지원요원 (건축· 도시계획)	시간선택제 임기제 (라급)	<p>◎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, 연구소 및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(건축·도시계획) 주요 업무(건축도시계획 관련 조사분석사무 등)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**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)

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

4. 보수 수준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비 고
8급(상당)	55,877천 원	39,859천 원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연봉책정 가능

※ 상기 보수액은 주40시간 기준액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(35시간)에 비례하여 책정함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 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접수	시험구분	시험일자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'22.12.5.(월) ~ 12.16.(금)	'22.12.19.(월) ~ 12.21.(수)	서류전형	'22.12.27.(화)	시의회사무처	'22.12.29.(목)
		면접시험	'23.1.12.(목)	시의회사무처	'23.1.16.(월)

※ 시험일자, 시험장소,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나.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 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*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
- * 자기소개서(30점), 직무계획서(30점), 관련분야 근무경력(40점)

다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
- 평가방식 : 5개 평정요소 마다 상, 중, 하로 평가
 -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- 합격자 결정 : 면접시험 평정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 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 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.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부산광역시의회 및 시 홈페이지 게시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수기간 : '22. 12. 19.(월) ~ 12. 21.(수), 09:00~18:00(점심시간 제외)

다. 접수처 :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인력개발팀(시의회 2층)

라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(메일, 택배,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)

* 우편주소 : (우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부산광역시의회
총무담당관 인력개발팀 임기제 채용담당자(☎051-888-8334)

* 우편접수 시, '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'를 함께 우송

*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(빠른 등기-익일 특급)까지 유효함 (등기수령여부 필히 유선확인 바람)

7. 제출 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- ②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- ▶ 응시수수료 : 8~9급(상당) 5,000원 / 6~7급(상당) 7,000원
 - 부산광역시 수입증지(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) 날인
 -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'우체국 통상환증서'로 대체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되며, 원서접수 시 해당 증명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<별지 제8호 서식> 제출

- ③ 이력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 -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
- ④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-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- ⑥ 졸업증명서 1부
 - ▶ 대학 이상(학사, 석사, 박사 등)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-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▶ 근무기간, 부서, 직책,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**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**)를 정확히 기재(발행기관 관인 날인된 원본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▶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인정되는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<별지 제9호 서식>' 추가 제출
- ▶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- ▶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'주당 근무시간'을 명시하여야 하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* ①, ②모두 제출
 - 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-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 -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'보험가입 전체기간' 발급
-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<별지 제6호 서식>
-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별지 제7호 서식>
- ⑪ 증명사진 1매 : 3.5×4.5cm(최근 6개월 이내)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<별지 제8호 서식>
- ②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 <별지 제9호 서식>
- ③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(사본) 각 1부
 - ▶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④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(5점 이내)
- ⑤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
 - ▶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<자유서식>
 - ▶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
- ⑥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(자유형식, A4 3매 이내)

다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유효기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※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함
 - ※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. 기타 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하기 바람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- 응시자(서류전형결과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 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 - ※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
 - ① 경력기간 ⇒ ② 자격증 유무 및 점수 순 ⇒ ③ 성과물 유무
-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
-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인력개발팀(051-888-8334)으로 문의 바람

붙임 1. 직무기술서 각 1부.

2.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. 끝.